

2021년



이승원, 이승철, 정병창



나무경영아카데미

www.namucpa.com / www.namucta.com

1. 조세법의 기본원칙

(1) 조세법률주의

조세법률주의란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의 근거 없이는 국가는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법률에 의해서만 납세의무를 진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는 행정부의 조세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자 하는데 그 근본목적이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세부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내 용
(1) 과세요건 법정주의	납세자, 과세물건과 그 귀속, 과세표준, 세율 등 납세의무를 성립시키고 변경·소멸시키는 조세실체법적 사항과 조세의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조세절차법적 사항 및 조세의 환급·불복·벌칙 등에 관한 조세구제와 처벌에 관한 사항은 모두 법률에 규정되어야 한다.
(2) 과세요건 명확주의	과세요건이나 조세의 부과징수절차 등을 법률로 정함에 있어서 그 내용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규정함으로써 과세당국의 자의적 해석·적용의 여지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소급과세의 금지	당해 세법의 시행 이전에 완결된 과세요건사실에 대해서는 당해 세법을 소급하여 적용해서는 안된다. 이는 조세법률주의의 중요한 기능인 국민 경제생활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4) 세법의 엄격해석	세법은 그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해석에 있어서 자의적 보충이나 보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5) 합법성의 원칙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의하여 결정된 조세채권은 반드시 합법적 절차에 의하여 부과·징수되어야 한다. 조세의 감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에 조세채무를 감면하거나 징수하지 않을 재량은 없다.

(2) 조세평등주의

조세평등주의란 조세의 부담이 국민의 담세력에 따라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세법을 제정하여야 하고(입법상의 조세공평), 조세법률관계의 각 당사자로서의 국민은 세법의 적용에 있어서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세법의 해석·적용상의 공평)는 원칙이다. 이는 조세부담공평의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헌법질서의 근본이 되고 있는 평등의 원칙 내지 불평등취급금지의 원칙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2. 기한의 특례

(1) 기한이 공휴일·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기타 서류의 제출·통지·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2) 국세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되는 경우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또는 납부기한일에 국세정보통신망이 정전, 통신상의 장애, 프로그램의 오류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3. 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1) 우편신고

우편으로 과세표준신고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또는 과세표준신고·과세표준수정신고·경정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우편법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이 찍힌 날(통신일부인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상 소요되는 우편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발송한 날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발신주의).

* 불복청구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한 불복청구서가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2) 전자신고

과세표준신고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등을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 등이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4.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연장

(1) 기한연장사유(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납부)

- ① 천재지변
- ② 납세자가 화재·전화(戰禍) 그 밖에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③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 ④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 포함)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 ⑤ 금융기관(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만 해당한다)또는 채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⑥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 또는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 ⑦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⑧ 납세자의 장부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세무대리를 수행하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회계법인, 세무법인 포함)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⑨ 위 ②, ③, ⑥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 ⑦의 경우는 납부에 한하여 기한이 연장되며 신고 등의 기한은 연장되지 않는다.

(2) 기한연장의 범위

위 사유에 따른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당해 기한연장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1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기한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신고와 관련된 기한연장은 9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3) 기한연장의 신청

기한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한만료일 3일 전까지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행정기관의 장은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자가 기한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한의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다.

5. 서류송달의 방법 [2006 출제]

구 분	내 용	효력발생
원칙	교부송달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	도달한 때 *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우편송달 서류를 등기우편이나 통상우편에 의하여 송달하는 방법	
	전자송달 서류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신인으로 지정된 자의 전자우편주소로 송달하는 방법	
예외	공시송달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교부송달이나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서류의 주요내용을 공시함으로써 송달의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방법	서류의 주요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때

(1) 교부송달

- ① 서류의 교부에 있어서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송달장소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 ②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에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 ③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유치송달).
- ④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2) 우편송달

- ① 납세의 고지·독촉·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 ② 소득세법상 중간예납규정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상 예정 고지서, 신고납부세목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세고지서로서 5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3) 전자송달

- ① 전자송달은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한다.
* 납세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납세자가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세액·예정부과세액을 확인한 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세액을 전액 자진납부한 경우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자진납부한 시점에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 ② 국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인하여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해 송달할 수 있다.

(4) 공시송달

- ① 공시송달의 사유(공시송달은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 a.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 b.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c. 수취인이 부재중이어서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경우
 -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 이상)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부재중인 경우

- ② 공시송달의 방법 : 국세정보통신망,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7. 법인으로 보는 단체

(1) 당연 법인의제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및 세법을 적용한다.

- ① 인·허가 또는 등록된 미등기단체 :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 ② 공익목적의 미등기재단 :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승인에 의한 법인의제

위 (1)에 해당하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 ①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 ②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 ③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법인으로 신청한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개별세법상 취급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 취급된다.

8.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

(1) 거주자로 보는 단체

법인 아닌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는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1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공동사업으로 보는 단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의 구분에 따라 해당 단체의 각 구성원별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① 구성원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해당 구성원별로 이익의 분배비율이 확인되는 경우
- ② 구성원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일부 확인 특례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의 전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의 분배비율만 확인되거나 일부 구성원에게만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① 확인되는 부분은 해당 구성원별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② 확인되지 아니하는 부분은 해당 단체를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9.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1) 국세부과의 원칙

- ① 실질과세의 원칙, ② 신의성실의 원칙, ③ 근거과세의 원칙, ④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2) 세법적용의 원칙

- ① 세법해석 기준, ② 소급과세 금지, ③ 세무공무원 재량한계 엄수, ④ 기업회계의 존중

10. 실질과세의 원칙 [2005 출제]

(1) 내 용

실질과세의 원칙이란 법적 형식과 경제적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러한 실질과세의 원칙은 다음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 ① 귀속에 관한 실질과세 :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②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과세 :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한 계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평등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이지만, 납세자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의 보호를 위해 조세법률주의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용되어야 한다.

11. 신의성실의 원칙 [2009 출제]

(1) 내 용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권리의 행사나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상대방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동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신의칙이라고도 한다. 국세기본법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적용대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과세관청과 납세자 쌍방 모두에게 적용되는 원칙이다. 다만,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신뢰를 배반한 경우에는 세법상 각종 제재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신의성실의 원칙은 주로 과세관청에 적용되는 원칙이며 과세관청이 보다 더 엄격하게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3) 과세관청에 대한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요건

- ① 납세자의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시가 있을 것
- ②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시를 신뢰하고, 그 신뢰에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을 것
- ③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시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경제적 거래나 세무상 처리 등의 행위를 할 것
- ④ 과세관청의 당초의 견해표시에 반하는 적법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을 것

(4) 한 계

신의성실의 원칙은 개별요건을 충족한 특정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이다.

12. 소급과세의 금지 [2009 출제]

소급과세의 금지란 행정법규의 효력발생 이전에 완결된 사실에 대하여 새로 제정된 법을 소급하여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음 사항을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다.

- (1) 입법에 의한 소급과세금지 :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이미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할 수 없다. 이는 조세법의 기본원칙인 조세법률주의의 하부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 (2) 행정상의 소급과세금지 :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않는다. 이러한 행정상의 소급과세금지규정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① 1.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대해서 그 이후의 새로운 법령이나 해석에 의해 소급하여 과세(진정소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과세기간 중에 세법이 개정된 경우에 과세기간 개시일로 소급하여 과세(부진정소급)하는 것은 허용된다.
 2. 소급과세의 금지는 소급과세로 인하여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납세자에게 유리한 소급효는 인정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13. 기업회계의 존중과 조세법률주의

기업회계의 존중이란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함을 말한다. 이러한 기업회계의 존중이 무한정 허용되는 경우 입법권자가 아닌 기업회계의 제정권자가 조세에 대한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결과가 초래됨으로써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회계의 존중은 세법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법률의 위임을 전제로 적용되어야 한다.

14. 납세의무의 성립

(1) 원칙적인 경우

	구 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1) 기간과세국세 (과세기간이 정 하여진 국세)	① 소득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② 법인세	
	③ 부가가치세	
(2) 수시과세국세 (특정 행위에 대하여 부과하 는 국세)	①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
	②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③ 개별소비세·주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 장에서 판매하는 때 또는 과세장소에 입장하 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 다만, 수입 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④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⑤ 증권거래세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3) 재산 보유에 대한 국세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4) 부가세(본세에 부가하여 징수 하는 국세)	① 교육세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다만,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 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② 농어촌특별세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5) 가산세	①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 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
	②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 천징수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미납액 부분)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 하는 때
	③ 납부지연가산세(체납액 의 3% 적용분)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④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 실가산세(3% 적용분)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⑤ 그 밖의 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2) 예외적인 경우

구 분	성 립 시 기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와 예정 신고·납부하는 소득세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
(4) 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국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

15. 납세의무 확정 [2011 출제]

(1) 원칙적인 경우

구 분	신고납세제도	정부부과제도
(1) 확정권자	납세의무자	정부(과세관청)
(2) 확정절차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	정부의 조사결정·납세고지
(3) 확정시기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4) 적용세목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신고납세제도 이외의 세목

* 1. 신고납세제도 세목이라 할지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를 납세의무 확정시기로 한다.

2.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신고납부를 허용하며 이 경우 납세의무 확정절차는 신고납세제도를 따른다.

(2) 예외적인 경우 : 자동확정

- ① 인지세
- ②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와 법인세
- ③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 ④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결정하는 경우는 제외)
- ⑤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가산세로 한정한다.)

16. 경정 등의 효력

- (1) 증액 경정 :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2) 감액 경정 :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으로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7. 납세의무의 소멸

구 분	납세의무의 소멸사유
(1) 납세의무가 실현되어 소멸하는 경우	① 납 부
	② 충 당
(2) 납세의무가 미실현상태에서 소멸하는 경우	③ 부과취소
	④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끝난 때
	⑤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

18.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1) 의미와 효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란 국가가 결정·경정결정·재경정결정 및 부과취소 등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즉 국세부과권의 법정존속기간을 말한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국세부과권은 미래를 향하여 소멸된다. 따라서 국가는 제척기간 만료일 이후에는 더 이상 결정·경정결정·재경정결정·부과취소를 할 수 없다.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납세의무는 확정 없이 소멸되므로 결손처분절차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2) 일반적 제척기간

구 분	내 용	제척기간
일반세목*1	(1)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2 *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5년으로 한다. 여기서 역외거래란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거래 및 ②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10년
	(2) 부정행위로 가산세 부과대상이 될 때 해당 가산세*3	

상속세 및 증여세	(3)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단, 역외 거래의 경우 10년)	7년 ^{*4}
	(4) 이외의 경우 (단, 역외 거래의 경우 7년)	5년 ^{*4}
	(1) 부정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15년
	(2)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한 경우 ^{*5}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한 부분만 해당함)	
	(4) 이외의 경우	10년

- * 1.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그 소득세는 증여세에 대하여 정한 기간을 따른다.
2.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10년(국제거래에서의 부정행위인 경우는 15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한다.
3. 해당 가산세는 다음의 가산세를 의미한다.
- ①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계산서·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계산서·세금계산서의 미발급, 거래 없이 가공발급·수취, 다른 사업자의 명의로 허위 발급·수취한 경우)
 - ② 법인세법상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계산서 미발급 또는 필요적 기재사항을 누락·허위 기재한 경우)
4. 5년 또는 7년의 제척기간이 끝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에 법인세법·소득세법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법인세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간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를 제척기간으로 한다.
5. 상속세와 증여세의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① 상속·증여재산가액에서 가공의 채무를 공제하여 신고한 경우
 - ②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을 상속인·수증자의 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상속·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 ③ 예금·주식·채권·보험금 그 밖의 금융자산을 상속·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3) 특례제척기간

① 상속세·증여세의 특례제척기간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인 제척기간에 불구하고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수유자 포함)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다음 5가지의 재산 합계액을 말한다)이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a.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그 자의 명의로 실명전환을 한 경우
- b. 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등록·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 c.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 d.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않은 유가증권·서화·골동품 등의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 e. 수증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증여자의 금융자산(차명계좌)을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사용·수익한 경우
- f.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 g.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

② 조세쟁송 등으로 인한 특례제척기간

일반적 제척기간에 불구하고 다음 각 경우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a. 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 b. 위 a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 c.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른 상호합의가 신청된 것으로서 그에 대하여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상호합의 절차의 종료일부터 1년
- d. 다음에 해당하는 경정청구·조정권고가 있는 경우: 경정청구일·조정권고일부터 2개월
 -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간주배당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소급적용 받기 위한 경정청구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 및 이에 대한 조정권고
- e. 위 d의 경정청구·조정권고가 있는 경우 그 경정청구·조정권고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경정청구일·조정권고일부터 2개월
- f.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 거래·행위 등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 포함)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③ 명의대여에 대한 특례제척기간

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원칙적 제척기간에 불구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비거주자·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 확인시 특례제척기간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에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 또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⑤ 조세정보 요청에 따른 특례제척기간

역외거래와 관련하여 원칙적인 부과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에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필요한 조세정보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요청하여 조세정보를 요청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조세정보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정보를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4) 제척기간의 기산일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기산한다.

구 분		제척기간의 기산일
(1) 원 칙	①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 (종합부동산세 제외)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
	② 종합부동산세·인지세	납세의무 성립일
(2) 예 외	③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	당해 원천징수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액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
	④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법정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날
	⑤ 공제·면제·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의 적용 등에 따른 세액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징수하는 경우	공제·면제·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은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

- *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란 신고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뿐만 아니라 과세표준신고 의무가 부여된 모든 국세를 말한다.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제척기간 기산일인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은 당해 국세의 정기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을 말한다. 따라서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은 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될 수 없다.

19.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2011 출제]

(1) 의미와 효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란 국가가 국세징수권을 일정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은 경우 그 국세징수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기산일에 소급하여 징수권이 소멸된다. 이 경우 국세를 포함하여 시효기간 중에 발생한 당해 국세에 대한 강제징수비 및 이자상당액도 동반 소멸된다. 국세의 금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2) 소멸시효

- ① 원칙 :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는 달리 각 세목별 차이는 없으며 특례기간도 존재하지 않는다.
- ②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 소멸시효에는 제척기간과는 달리 중단이나 정지제도가 존재한다.

구 분	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의 정지
의 미	권리행사로 볼 수 있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	일정기간 동안 시효의 완성을 유예하는 제도
사 유	① 납세고지 ② 독촉 ③ 교부청구 ④ 압류	① 세법에 따른 분납기간 ② 세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③ 세법에 따른 강제징수유예기간 ④ 세법에 따른 연부연납기간 ⑤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나 민법에 따른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⑥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기간
효 과	중단된 소멸시효는 고지한 납부기한, 독촉이나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한, 교부청구 중의 기간,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소멸시효가 정지된 경우에는 이미 진행한 소멸시효가 효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정지의 사유가 종료한 후 잔여기간만의 진행에 의해 시효가 완성된다.

* 사해행위 취소소송 또는 채권자대위 소송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3) 소멸시효의 기산일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기산한다.

구 분		소멸시효의 기산일
(1) 원칙	①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	그 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②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
(2) 예외	③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의 경우 납세고지한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
	④ 인지세의 경우 납세고지한 인지세액	
	⑤ 위 ①의 법정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날

* 1.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의 경우에는 위 ①을 적용하며, 정부부과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의 경우에는 위 ②를 적용한다.

2.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이라 하더라도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에 따라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수시부과결정하여 고지한 경우에는 위 ②를 적용한다.

20.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비교

구 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1) 개념	국세부과권(형성권)의 존속기간	국세징수권(청구권)의 불행사기간
(2) 기간	5년, 7년, 10년, 15년, 특례	5년 또는 10년
(3) 기산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
(4) 중단과 정지제도	없음	있음
(5) 기간만료의 효과	미래를 향해 부과권 소멸 (소급효가 없음)	기산일로 소급하여 징수권 소멸 (소급효가 있음)
(6) 시효의 이익포기	불가함	
(7) 납세자의 원용	불필요함	

21. 납세의무의 승계 [2010, 2008 출제]

구 분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대 상	피합병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
승계인	합병법인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
한 도	한도 없이 전액 승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 (=상속자산총액-부채총액-상속세)
범 위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는 그 확정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승계	

- 참고 1.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납세의무 승계의 범위
 상속인 등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민법의 규정에 의한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상속포기자의 납세의무 승계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인은 「민법」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받는 때에는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납세의무 승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2. 국세기본법의 연대납세의무 [2010 출제]

(1) 공유물·공동사업에 있어서의 연대납세의무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분할·분할합병에 관한 연대납세의무

구 분	불완전 분할	완전 분할
대 상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	해산되는 법인에 대하여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
연대납세의무자	① 분할법인 ② 분할신설법인 ③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① 분할신설법인 ②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한 도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회사의 연대납세의무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의 법인에 대하여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신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23. 개별세법의 연대납세의무

- ① 소득세법 : 공동사업합산과세의 경우 합산대상 공동사업자의 연대납세의무 및 우회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있어서 증여자와 그의 특수관계인인 양도인의 연대납세의무
- ② 법인세법 : 각 연결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대한 연결법인의 연대납세의무
- ③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 법인이 해산한 경우 원천징수하여야 할 법인세·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법인세·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때에 청산인과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은 자의 연대납세의무
-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세에 대한 공동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 및 특정 경우에 있어서 증여세에 대한 증여자와 수증자의 연대납세의무

24. 제2차 납세의무 [2015, 2011, 2010, 2008, 2007 출제]

(1)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구 분	내 용
요 건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청산 후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하였을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주된 납세의무자	해산된 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① 청산인 및 ② 청산 후 남은 재산을 분배·인도받은 자
한도액	① 청산인 : 분배·인도한 재산의 가액 ② 청산 후 남은 재산을 분배·인도받은 자 :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 * 재산의 가액은 청산 후 남은 재산을 분배·인도한 날 현재의 시가로 한다.
대상국세	확정 불필요

(2) 출자자 등의 제2차 납세의무

구 분	내 용
요 건	법인(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79제1))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주된 납세의무자	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① 무한책임사원 및 ② 과점주주
한도액	① 무한책임사원: 부족한 금액 전액 ② 과점주주: 부족한 금액×지분율(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
대상국세	확정 불필요

*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 등 일정 특수관계인으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50%를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을 말한다.

(3)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구 분	내 용
요 건	국세(둘 이상의 국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뒤에 오는 국세)의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재산으로 그들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a. 정부가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재공매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는 경우 b. 법률·정관에 의해 출자자의 소유주식·출자지분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중이어서 공매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
주된 납세의무자	① 무한책임사원 및 ②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국세의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 법인
한도액	법인의 순자산가액×지분율 * 순자산가액 산정시 자산·부채총액은 해당 국세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대상국세	확정된 것에 한함

(4)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구 분	내 용
요 건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
주된 납세의무자	사업양도인
제2차 납세의무자	사업양수인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인 자 ②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
한도액	양수한 재산의 가액
대상국세	확정된 것에 한함

- * 1. 사업양수인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모든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
2.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 ① 사업양수인이 사업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 ② 위 ①의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
- 단, 위 ①의 금액과 시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위 ①과 ② 중 큰 금액

25. 국세와 다른 채권의 우선순위 [2004 출제]

우선순위	내 용
1	강제집행비용(강제집행·경매·파산절차에 든 비용) 선집행된 지방세·공과금의 강제징수비 및 국세의 강제징수비
2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 특정 임금채권(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최종 3년분 퇴직금과 재해보상금)
3	법정기일이 담보설정일(또는 확정기일) 이전인 국세 당해 재산에 직접 관련된 국세(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
4	담보채권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5	기타의 임금채권
6	법정기일이 담보설정일(또는 확정기일) 이후인 국세
7	공과금과 기타 일반채권

- * 1. 지방세는 조세채권간의 우선순위에 따라 판정하여야 하며, 공과금은 국세에 우선하지 못한다.
2. 당해 재산에 관련되는 국세(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담보설정일에 관계없이 담보채권에 항상 우선한다.
3.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 ①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가등기된 경우: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국세에 우선한다.
- ② 국세의 법정기일 후에 가등기된 경우: 국세가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한다.

26. 국세와 담보채권 경합에 있어서 국세의 법정기일

구 분	법정기일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에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및 예정신고납부하는 양도소득세 포함)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 ^{*1}	신고일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에 고지한 해당 세액 ^{*2}	납부고지서 발송일
(3) 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	납세의무 확정일
(4)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 포함)의 재산 또는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부고지서 발송일
(5) 납세자의 재산을 확정전 보전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	압류등기(등록)일
(6) 부가가치세법상 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에 따라 신탁재산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징수하는 경우	납부고지서 발송일
(8) 신탁재산에서 징수하는 종합부동산세 등 	납부고지서 발송일

* 1. 신고납세제도의 국세 중 '신고한 세액' 부분에만 적용되므로 신고납세제도의 국세라 할지라도 무신고·과소신고세액 부분의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 된다.

2. ㉠ 납부지연가산세 중 납세고지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와 ㉡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 중 납세고지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다.

27. 조세채권간의 우선순위

조세채권이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는 동 순위로 변제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납세담보가 있거나 강제징수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에 압류한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의하여 변제된다.

1순위 : 납세담보를 받은 국세와 지방세

2순위 : 압류에 관계된 국세와 지방세

3순위 : 교부청구한 국세와 지방세

28.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납세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자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할 수 있다.

(1) 물적납세의무의 성립요건

- ① 양도담보설정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체납하여야 하며, 양도담보설정자의 다른 재산(양도담보재산을 제외한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 ② 양도담보의 설정시점이 양도담보설정자가 체납한 국세의 법정기일 이후여야 한다.
- ③ 양도담보권자에게 납부고지서가 송달되는 시점에 양도담보재산이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 * 「국세징수법」에 따라 양도담보권자에게 납부고지가 있는 후 납세자가 양도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보된 채무를 불이행하여 해당 재산이 양도담보권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고 양도담보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 당시의 양도담보재산이 계속하여 양도담보재산으로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개시**

(2) 물적납세의무의 징수절차

세무서장이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담보권자에게 납부통지서에 본래의 납세고지서를 첨부하여 송달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양도담보권자가 물적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독촉 없이 양도담보재산에 대해서 강제징수를 집행한다.

29. 담보권설정에 대한 취소청구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짜고 거짓으로 재산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하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국세를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취소청구의 적용요건

- ① 납세자가 제3자와 짜고 거짓으로 해당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권을 설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3자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다.
- ② 해당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국세를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2) 통정허위계약의 입증책임

통정허위계약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세무서장에게 있다. 다만, 납세자가 국세의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인과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계약,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하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개시**에는 이를 짜고 한 허위계약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이 때에는 납세자가 담보권설정이 짜고 한 거짓계약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30. 수정신고 [2003, 2000 출제]

- (1) 대상자 :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②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 연말정산대상소득, 퇴직소득 등 소득세법상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 포함

(2) 사 유

- ①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 ②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상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의 소득 등을 누락한 경우
- ④ 법인세법상 국고보조금·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 ⑤ 과세이연요건을 충족한 합병·분할·물적분할 및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로서 세무조정 과정에서 양도차익의 전부나 일부를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 (3) 기 한 :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국세부과의 일반적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4) 효 력

구 분	납세의무의 확정 효력
신고납세제도 세목에 대한 수정신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제외)	○
정부부과제도 세목에 대한 수정신고	×

31. 경정청구 [2003, 2000 출제]

(1) 통상적인 경정 등의 청구

- ① 대상자 :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 ② 사 유
- a.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 b.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 ③ 기 한

구 분	경정 등의 청구 기한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결정·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한함)

(2)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 등의 청구

- ① 대상자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
- ② 사 유
- a.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 b.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 c.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 d.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로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 e.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 또는 취소된 경우
 -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 ③ 기 한 :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3) 연말정산세액에 대한 경정 등의 청구

과세표준신고의 의무가 없는 원천징수대상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법인세를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당해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연말정산대상소득, 퇴직소득 등 소득세법상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 및 분리과세되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4) 경정청구의 효력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2개월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 * 1. 경정 등의 청구는 납세의무자의 “청구”일 뿐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다.
2. 다만,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기간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청구를 한 자에게 관련 진행상황 및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774**

32. 기한후 신고

(1) 대 상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가산세 포함)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세액의 납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3) 효 력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조사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기한후 신고는 신고납세제도 세목과 정부부과제도 세목을 막론하고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다.

33. 신고관련가산세에 있어서 부정행위의 개념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에 있어서 “부정행위”란 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①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 ②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 ③ 장부와 기록의 파기
- ④ 재산의 은닉·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 ⑤ 고의적인 장부의 미작성 또는 계산서·세금계산서 및 그 합계표의 조작
- ⑥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 ⑦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34. 가산세의 감면 [2012 출제]

(1) 100% 가산세 감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의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가산세 감면시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不知)·착오 등도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① 천재·지변 등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②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③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에 따라 신고·납부 하였으나, 이 후 번복된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 ④ 수용, 도시계획 결정, 기타 법률 규정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이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 ⑤ 「소득세법」에 따라 실손의료보험금을 의료비에서 제외함에 있어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이 달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신고 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산**

(2)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초과환급)가산세 감면

구 분	감면액
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해당 가산세액×90%
②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해당 가산세액×75%
③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해당 가산세액×50%
④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해당 가산세액×30%
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해당 가산세액×20%
⑥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해당 가산세액×10%

다만,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면되지 않는다.

(3) 기한후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감면

구 분	감면액
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해당 가산세액×50%
②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해당 가산세액×30%
③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해당 가산세액×20%

다만,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4) 지연제출 등 감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 ①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결정·통지 지연기간에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
- ② 세법에 따른 제출, 개설 등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제출 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
- ③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법에 따른 예정신고기한 및 중간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하였으나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로서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수정하여 신고한 경우(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 ④ 기한후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법에 따른 예정신고기한 및 중간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 무신고가산세

(5) 가산세 한도

과세기간별(상속은 상속개시하거나 재산을 취득하는 단위)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이 아닌 경우는 1억)을 한도로 한다. 그러나 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 다만, 2%(3%)가 부과되는 세금계산서·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한도가 없다.

35. 국세환급금의 처리절차

(1) 결 정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국세환급신청서에 의한다.

(2) 충 당(결정된 국세환급금과 납세자의 조세채무 상계)

- ① 신청에 의한 충당: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납기전징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와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는 납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충당한 다. 이 경우 충당 청구를 한 날에 당해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 ② 직권충당 :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부분 포함)와 납기전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는 납세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충당한다. 이 경우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와 국세환급금은 체납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과 국세환급금 발생일 중 늦은 때로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소급효 인정).
- ③ 국세환급금을 충당할 경우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가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하는 것을 동의하거나 신청한 경우에는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충당할 국세환급금이 2건 이상인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먼저 도래하는 것부터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할 수 있다.

(3) 지 급

- 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지급(계좌이체지급 또는 현금지급)하여야 한다.
- ② 명의대여시 환급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어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경우 명의대여자 대신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실질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에게 환급한다.
- ③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 양도
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는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급하기 전에 문서로 세무서장에게 양도를 요구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요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양도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있거나 양수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있으면 이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양수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36. 물납재산의 환급

(1) 개 요

- ①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 ②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물납재산의 환급순서

물납재산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의 순서에 관하여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하고, 납세자의 신청이 없는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는 물납충당재산의 허가순서의 역순으로 환급한다.

(3) 물납재산의 관리비용 및 과실의 귀속

- ① 물납재산을 환급하는 경우에 국가가 물납재산을 유지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국가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국가가 물납재산에 대하여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을 한 경우에는 이를 납세자의 부담으로 한다.
- ② 물납재산을 환급하는 경우 물납재산의 수납 이후 발생한 법정과실(임대료, 이자 등)과 천연과실(과일, 달걀, 우유 등)은 납세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국가에 귀속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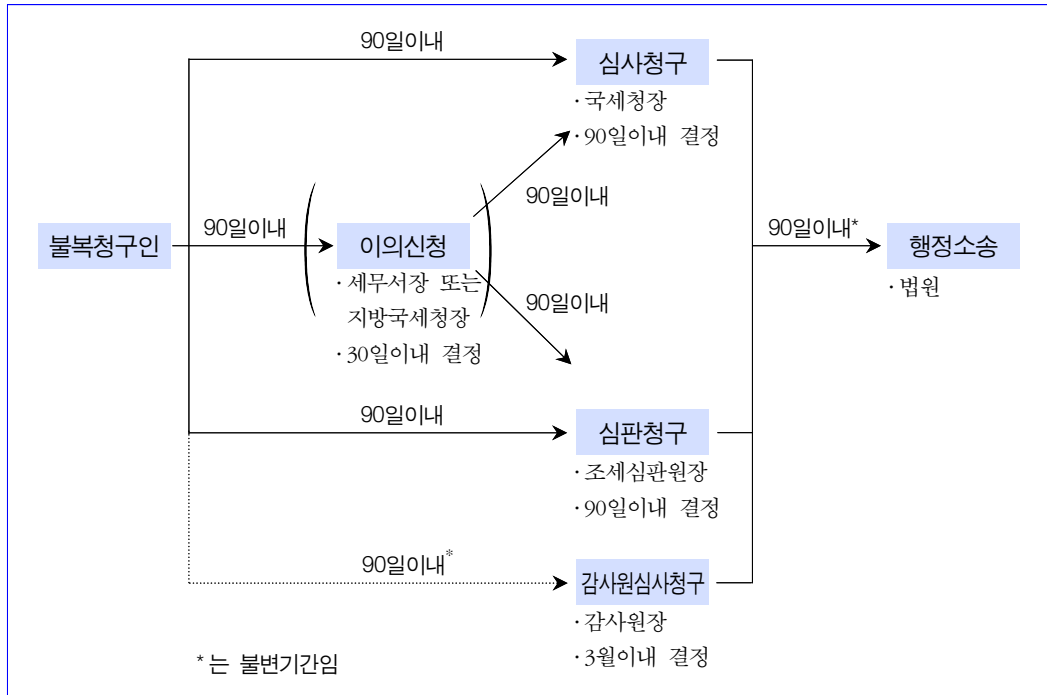
(4) 물납재산의 환급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당해 물납재산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납재산의 환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환급규정을 적용한다.

- ① 당해 물납재산이 매각된 경우
- ② 당해 물납재산이 성질상 분할하여 환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 ③ 당해 물납재산이 임대중에 있거나 다른 행정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④ 사용계획이 수립되어 당해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37. 조세불복제도 [2013 출제]

불복청구인은 국세기본법 및 감사원법의 규정에 따라 다음 중 하나의 불복절차를 선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임의절차이므로 생략이 가능하다(원칙적 1심급, 선택적 2심급).



- * 1. 국세에 관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배제된다.
2.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3.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4. 이의신청에 있어서 다음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 ①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에 따라 과세처분을 한 경우
 - ② 조사한 세무서장과 과세처분한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과세처분한 세무서장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제기함)
 - ③ 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
5. 행정심판전치주의: 국세에 관한 행정쟁송은 국세기본법 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불복절차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를 경유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불채택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도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38. 불복청구

(1) 불복청구의 대상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a)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b)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개괄주의). 다만,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 ②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2) 불복청구의 제한

- 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과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3) 불복청구인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직접적인 당사자 뿐만 아니라 다음의 이해관계인도 포함된다.

- 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 ②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 및 부가가치세법상 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 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 ③ 보증인

39. 불복청구의 효력

(1) 집행부정지의 원칙

불복청구를 하더라도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집행부정지의 원칙의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불복청구로 인하여 행정처분의 집행이 정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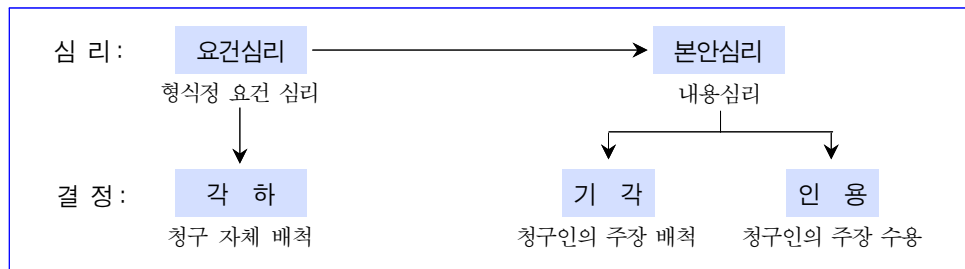
- ① 불복청구인이 심한 재해를 입은 경우: 불복청구인이 심한 재해를 입은 경우에 정부가 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게 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 ② 공매의 경우 : 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청구가 계류중인 때에는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그 압류한 재산을 공매할 수 없다. 다만, 그 재산이 부패·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감소될 우려가 있는 때는 예외로 한다.

40.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

(1) 결정의 종류

- ① 각하 : 요건심리의 결과 신청·청구가 형식적으로 부적법한 경우 본안심리를 하지 않고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② 기각 : 본안심리의 결과 신청·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신청·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 ③ 인용 : 본안심리의 결과 신청·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신청·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2) 결정의 효력 [2013 출제]

- ① 기속력(羈束力) : 재결청의 결정은 불복청구인과 관계행정청을 그 결정의 취지에 따르도록 하는 기속력 또는 구속력을 갖는다. 따라서 당해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② 불가쟁력(不可爭力) :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가 일정 청구기간 내에 다음 심급에 대한 불복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 결정은 형식적으로 확정되며, 이 경우 당해 결정에 하자가 있더라도 후심 재심절차에서 그 결정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 ③ 불가변력(不可變力):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은 재결청 자신도 이에 구속되며 그 결정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각하결정의 경우에는 내용을 심리한 것이 아니므로 불가변력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오기(誤記)나 계산착오 등 단순오류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불복청구인의 신청에 의해서 이를 경정할 수 있다.

41. 납세자권리현장

국세청장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현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세무공무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현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 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
- ②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 세무조사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기 위해 질문을 하거나 장부등(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것으로서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법칙조사를 포함한다.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원증을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현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 요청 사항·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42.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②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 ③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 ④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 ⑤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 제공을 알선한 경우

43. 세무조사

(1)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법칙조사 포함)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된다.
- ② 재조사 금지: 세무공무원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 a.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 b.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 c.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 d.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
 - e.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 f. 통합조사 원칙의 예외로서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 g.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 h.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하여 작성 등을 하여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
 - i. 각종 과세자료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
 - j.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 ④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세무조사시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3) 세무조사 관할

세무조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같은 지방국세청 소관 세무서 관할 조정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 ① 납세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와 납세지가 관할을 달리하는 경우

- ② 조사대상 납세자와 출자관계에 있는 자, 거래에 있는 자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 ③ 세무관서별 업무량과 조사인력 등을 감안하여 관할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④ 관할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4)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 ① 정기선정 : 세무공무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객관적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 a.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과세자료, 세무정보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의견, 외부감사 실시내용 등 회계성실도 자료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b.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하여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 c.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 업종별 수입금액이 1억원 이하인 법인 및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개인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하여는 정기선정에 의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수시선정 : 세무공무원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원칙의 예외(45.항목의 ①~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위한 조사 : 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5)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부분조사인 경우 그 범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②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경우는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a.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
 - b.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이 때에는 세무조사를 개시할 때 다음 각 사항이 포함된 세무조사통지서를 세무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사전통지 사항
 -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

- ③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천재지변
 - 화재 기타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을 때
 -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 ④ 연기신청을 받은 세무공무원은 연기신청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사개시 전 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6) 세무조사 기간

- ① 세무조사 기간 :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다음의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a.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 b.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 c.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조사유형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는 경우
 - d.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 e. 납세자보호관·담당관이 세금탈루혐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f. 세무조사 대상자가 세금탈루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하여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로서 납세자 보호관 등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 ③ 세무조사 기간 제한: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하며, 해당 기간을 최초로 연장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2회 이후 연장의 경우에는 관할 상급 세무관서 장의 승인을 받아 각각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 기간 제한의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어 실제 거래 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거래를 이용하여 세금을 탈루하거나 국내 탈루소득을 해외로 변칙유출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3. 명의위장, 이중장부의 작성, 차명계좌의 이용, 현금거래의 누락 등의 방법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4. 거짓계약서 작성, 미등기양도 등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5. 상속세·증여세 조사, 주식변동 조사, 범죄사건 조사 및 출자·거래관계에 있는 관련자에 대하여 동시조사를 하는 경우
- ④ 세무조사의 중지: 세무공무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지기간은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며, 중지기간 중에는 납세자에 대하여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기 위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의 검사·조사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 * 세무조사를 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a.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납세자가 조사중지를 신청한 경우
 - b. 국외자료의 수집·제출 또는 세무조사 기간 중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과세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 c. 다음 각 사유로 인해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 납세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또는 해외로 출국한 경우
 -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면 또는 거부한 경우
 -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 d.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이 세무조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 ⑤ 세무조사의 재개: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중지한 사유가 소멸하게 되면 즉시 조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채권의 확보 등 긴급히 조사를 재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
- * 세무조사를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⑥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장부기록 및 회계처리 등의 투명성 등 납세성실도를 검토하여 더 이상 조사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조사기간 종료 전이라도 조사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다.

(7) 세무조사 범위확대의 제한

세무공무원은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 ①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 ② 조사과정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범죄사건 조사로 전환하는 경우

- ③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적용 착오 등이 있는 조세대상 과세기간의 특정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유사한 혐의 또는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 ④ 그 밖에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8) 세무조사의 결과통지

-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공시송달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결과통지의 의무가 없다.
 - a.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않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은 경우
 - b. 불복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재조사결정에 의한 조사를 마친 경우
 - c.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44. 과세전적부심사

(1) 과세전적부심사 대상

- ①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 ② 다음에 해당하는 과세예고통지
 - a.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 의 업무감사결과(현지 시정조치의 경우 포함)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하는 과세예고통지
 - b.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기 위한 조사에서 확인된 당해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하는 과세예고통지
 - c.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백만원 이상인 과세예고통지

(2)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절차

- ①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인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인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고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기에 결정하거나 경정결정해 줄 것을 그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신청받은 내용대로 즉시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 다음의 경우는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2006 출제]

- 1.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

2. 국세청장의 훈령·예규·고시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
3.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하는 과세예고통지에 관한 것
4. 위 이외의 사항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금액이 1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것
5. 감사원법에 따른 시정 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 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지 못한 것

(3) 과세전적부심사 배제사유 [2006 출제]

- ① 국세징수법에 규정된 납기전 징수 사유 또는 세법에 규정된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 ②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 ③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 ④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
- ⑤ 불복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세무조사인 경우

(4) 과세전적부심사의 효력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정정결정을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전적부심사의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인 통지를 받은 자의 조기 결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① 심사거부: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여 심사하지 아니하는 결정
- ② 불채택: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어 채택하지 않는다는 결정
- ③ 채택: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채택하거나 일부 채택하는 결정 또는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인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당초 통지 내용을 수정하거나 유지하는 등의 통지를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

지방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

1. 지방세의 세율

구 분	개 념	해당 세목
(1) 일정세율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 세율을 말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의해 이를 조정할 수 없다.	등록면허세(부동산등기는 제외), 지방소비세, 자동차세 주행분 등
(2) 표준세율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 세율이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근거하여 법률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취득세, 부동산등기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균등분(사업소를 둔 법인·개인) 및 종업원분, 자동차세 소유분 등
(3) 제한세율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 세율의 상한선을 말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근거하여 그 이하의 범위에서 세율을 정할 수 있다.	주민세 균등분(주소를 둔 개인) 및 재산분 등
(4) 임의세율	법률에서 세율을 정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의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세율을 말한다.	적용대상 없음

2. 지방세의 종류

구 분	도세 및 시·군세		특별시·광역시세 및 구세	
	도 세	시·군세	특별시·광역시세	구 세
(1) 보통세	취득세	—	취득세	—
	등록면허세	—	—	등록면허세
	레저세	—	레저세	—
	—	담배소비세	담배소비세	—
	지방소비세	—	지방소비세	—
	—	주민세	주민세	—
	—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
	—	재산세	—	재산세
(2) 목적세	—	자동차세	자동차세	—
	지역자원시설세	—	지역자원시설세	—
	지방교육세	—	지방교육세	—

* 1. 광역시의 군 지역은 도세를 광역시세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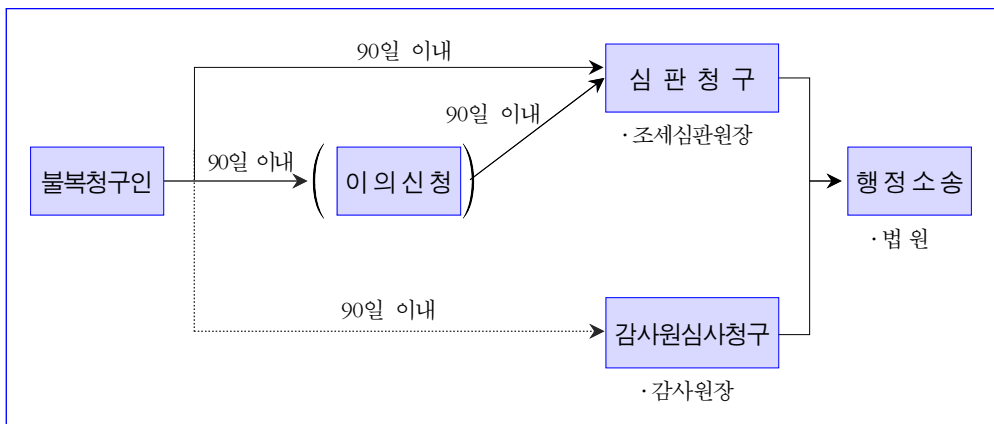
2. 광역시의 경우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구세로 한다.

3. 특별시 관할구역에 있는 구의 경우 재산세의 50%는 특별시세로 징수하여 자치구에 교부한다.

3. 지방세의 징수방법

구 분	개 념	해당 세목
(1) 보통징수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해당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	재산세, 주민세 균등분, 자동차세 소유분 등
(2) 신고납부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그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3) 특별징수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특별징수의무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액을 납부하게 하는 것 * 이는 국세의 원천징수제도와 유사하다.	소득세 및 법인세 원천징수시 함께 징수하는 지방소득세

4. 지방세의 불복절차



* 1. 불복청구의 상대방

구 분	이의신청	심판청구
시·군세(구세)	시장·군수(구청장)	조세심판원장
도세(특별시·광역시세)	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	조세심판원장

- 이의신청은 임의절차이므로 생략이 가능하다.
- 행정심판 전치주의: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에도 불구하고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7941**
- 지방세는 국세와 달리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5. 지방세부과의 제척기간

구 분	제척기간
(1) 사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경감받은 경우	10년
(2)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7년
(3) 그 밖의 경우	5년

* 다음에 따른 취득으로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10년으로 한다.

- ①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 ②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의신탁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
- ③ 타인의 명의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였지만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의 실권리자인 자가 과점주주가 되어 간주취득 규정에 따라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

6. 지방소득세

(1)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 및 과세기간

구 분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과세기간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법인세법상 소득	법인세의 과세기간
개인지방소득세	소득세의 납세의무자	소득세법상 소득	소득세의 과세기간

(2) 과세표준 및 세율

- ① 과세표준 : 법인세와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각각 법인지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 ② 세율 : 지방세법은 법인지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각각 법인세와 소득세 세율의 1/10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표준세율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서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3) 징수방법

구 분	신 고 납 부	특 별 징 수
법인지방소득세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소득세의 10%를 특별징수
개인지방소득세	소득세 신고납부 기한까지	

* 지방소득세(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제외)의 세액이 ₩2,000 미만일 때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7. 지방소비세

(1) 개 요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경제활동과 지방세수와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1%를 지방세인 지방소비세로 이양하여 지방세수에 충당한다. 납세의무자는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와 함께 신고·납부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수입의 경우 세관장)을 특별징수의무자로 하여 징수된 지방소비세는 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에 따라 각 도에 안분된다.

(2) 일반사항

구 분	내 용
(1) 과세대상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준용
(2) 납세의무자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에게 부과
(3)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감면·공제세액 + 가산세
(4) 세액	과세표준 × 11%
(5) 납세지	부가가치세의 신고·납세지

(3) 신고 및 납부

지방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경정 및 환급할 경우에는 지방소비세와 부가가치세가 합쳐진 금액으로 신고·납부·경정 및 환급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지방소비세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8. 취득세 과세대상

구 분	과 세 대 상 자 산
(1) 부동산	토지 및 건축물
(2) 부동산에 준하는 것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임목
(3) 무형자산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4) 각종 회원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9. 취득세 납세의무자

(1)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자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사실상으로 취득한 자는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2) 취득의 개념

실질 취득

① 취득의 개념

‘취득’이란 매매·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상속·증여·기부, 건축·개수¹⁾·공유수면의 매립·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인한 취득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 제외)·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② 사실상의 취득

과세대상자산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10. 비상장법인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2007, 2001 출제]

구 분	내 용
(1)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그 시점의 지분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본다. * 법인설립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과점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기존 과점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본다. 다만, 증가된 후의 지분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당해 과점주주 지분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과점주주에서 제외된 자가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지분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지분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 한하여 그 증가된 분만을 취득으로 본다. * 과점주주에서 제외된 자가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로 본다.

- * 1. 과점주주는 비상장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 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50%초과인 자를 말한다.
2. 과점주주가 된 이후에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과점주주에게 취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른 주주의 보유지분의 소각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지분을 취득한 경우가 아니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간주취득의 경우 과세대상자산의 총가액에 과점주주의 지분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개수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① 「건축법」에 따른 대수선
- ② 건축물 중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을 수선하는 것
- ③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승강기 등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

11. 취득세 과세표준

(1) 원 칙

$$\text{과세표준} = \text{Max}[\text{취득당시의 가액, 시가표준액}]$$

* 취득당시의 가액 :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연부취득인 경우에는 연부금액)

참고 시가표준액

1. 토지 및 주택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2. 위 이외의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 :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2) 예외 : 사실상 취득가격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①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
- ②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
- ③ 판결문·법원장부¹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 ④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 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다만,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 또는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의 조사 결과에 따라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확인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2. 취득세의 납세절차 [2004 출제]

(1) 징수방법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방법에 의한다.

-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②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기·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③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려는 채권자대위자는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7124**

(2) 가산세

- ① 일반가산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산출된 가산세를 합산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 ㉠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 ㉡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이 확인된 경우
 - ㉢ 건축 또는 대수선시 취득가격 특례를 적용하는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이 확인된 경우
 - ㉣ ㉠의 취득 중 부동산거래신고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으로서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 결과에 따라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확인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이 확인된 경우
- ② 증가산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80%를 가산한 금액을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3. 재산세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1)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과 세 대 상	과 세 표 준
(1) 토지, 건축물, 주택	시가표준액 ×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2) 선박, 항공기	시가표준액

* 1.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50% ~ 90% 사이에서 변동될 수 있으며 현재는 70%이다.

2. 주택에 대한 적용비율은 40% ~ 80% 사이에서 변동될 수 있으며 현재는 60%이다.

(2) 납세의무자

- ① 원칙 :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인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 ②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의제납세의무자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아니라도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4.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14.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구 분	과 세 대 상
(1) 종합합산 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과 분리과세대상을 제외한 토지 * 시·군 관할구역 소재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을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2) 별도합산 과세대상	건축물 부속토지 및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법 소정 토지 * 시·군 관할구역 소재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만을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3) 분리과세 대상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않고 당해 토지가액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토지 *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 임야 등은 저율로, 골프장용 토지와 고급오락장용 토지 등은 고율로 과세한다.

15. 재산세 납세절차

(1) 징수방법

재산세의 징수는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며 고지서 1매당 세액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2) 납 기 [2004, 2005 출제]

과 세 대 상	납 기
(1) 건축물, 선박, 항공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2) 주택*	
산출세액의 1/2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나머지 1/2	
(3) 토지	

*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3) 물납 및 분납

- ① 물납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 무자의 신청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분납 :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구 분	분납할 수 있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16. 종합부동산세의 개요

(1) 의 의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통해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세이다.

(2) 구 성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과세와 토지에 대한 과세로 구성된다. 주택과 토지의 보유에 대해서는 지방세인 재산세가 부과되지만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고액의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추가로 부과하고 당해 세수를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우선 배분한다.

17.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1) 납세의무자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지방세법상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다.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06 헌바 112, 2008. 11. 13선고)으로 인하여 세대원이 주택을 각자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이를 합산하지 않고 별산과세한다.

① 공시가격

공시가격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동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말하며 동법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준용한다.

(2) 과세표준

$$\text{과세표준} = (\text{납세의무자별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 - 6\text{억원}) \times \text{공정시장가액비율}$$

- * 1.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 ~ 100% 사이에서 변동될 수 있으며 현재는 80%이다.
- 2.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9억원을 공제한다.
- 3. 주택의 범위에는 법 소정의 임대주택과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등은 제외한다.
- 4. 중과세를 적용 법인은 기본공제 6억원을 공제하지 않는다. **79P1**

(3) 납부세액

$$\text{납부세액} = \text{과세표준} \times \text{세율} - \text{주택분 재산세}^{*1} - 1\text{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2}$$

- * 1.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 2.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
(아래 (1)과 (2) 중복적용 가능하며 공제율은 주택분 재산세 차감 후 세액에 대한 비율임)
- (1) 연령별 공제

연 령	공제율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	10%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	20%
만 70세 이상	30%

(2) 보유기간별 공제

보유기간	공제율
5년 이상 10년 미만	20%
10년 이상 15년 미만	40%
15년 이상	50%

18.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1) 납세의무자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지방세법상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이다.

- ①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 ②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상가 등 부속토지)의 경우 :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 주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토지에 대해서도 세대합산과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2) 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

$$\text{과세표준} = (\text{납세의무자별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 합산액} - 5\text{억원}) \times \text{공정시장가액비율}$$

② 별도합산과세대상

$$\text{과세표준} = (\text{납세의무자별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 합산액} - 80\text{억원}) \times \text{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100% 사이에서 변동될 수 있으며 현재는 80%이다.

(3) 납부세액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

$$\text{납부세액} = \text{과세표준} \times \text{세율} - \text{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

* 과세표준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

$$\text{납부세액} = \text{과세표준} \times \text{세율} - \text{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

*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19.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1) 납세의무자

신탁재산의 위탁자를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한다.

(2) 수탁자에 대한 물적 납세의무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체납한 경우, 수탁자가 소유한 신탁재산에 대해 강제징수를 한다.

20. 종합부동산세 납부절차 [2005 출제]

(1) 부과·징수 및 신고납부

① 부과·징수 :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과·징수하며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신고납부 :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선택한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장이나 한국은행, 체신관서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납세지

납세의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납세지 규정을 준용하고,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납세지 규정을 준용한다.

(3) 분 납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백5십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구 분	분납할 수 있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백5십만원 초과 5백만원 이하인 경우	2백5십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1. 상속세의 신고와 납부

(1) 상속세의 과세표준신고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상속세의 납부

① 일반적인 경우

상속세의 신고를 하는 자는 신고기한 이내에 산출세액에서 징수유예세액, 공제 또는 감면되는 세액, 연부연납 신청금액 및 물납 신청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분납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다만,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 분	분납할 수 있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3) 연부연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 중 금전, 법 소정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및 납세보증서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②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구 분		연부연납기간	연부연납세액
1) 원칙(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5년	연부연납 대상금액*3 (연부연납기간+1)
2) 가업상속재산 등*1			
① 가업상속재산 등의비율*2 50% 이상	㉠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20년 ㉡ 허가 후 5년이 되는 날부터 15년		
② 가업상속재산 등의 비율*2 50% 미만	㉢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10년 ㉣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7년		

- * 1. 가업상속재산 등이란 가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일정한 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 받은 경우를 말한다.
2. 가업상속재산 등의 비율이란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 제외) 중 가업상속재산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3. 가업상속재산가액에 대하여 연부연납할 수 있는 상속세 납부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기업상속재산가액이란 상속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text{연부연납 상속세 납부세액} = \text{상속세 납부세액} \times \frac{(\text{기업상속재산가액} - \text{가업상속공제금액})}{(\text{총상속재산가액} - \text{가업상속공제금액})}$$

(연부연납 대상금액)

세무사항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 연부연납 특례(10년 또는 20년)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 (1)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요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
- (2) 피상속인 요건: 피상속인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50%(상장법인: 30%) 이상을 5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 ② 피상속인이 해당 기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로서 해당 기업의 영위기간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할 것
 - ㉠ 30% 이상의 기간
 - ㉡ 5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
 -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중 3년 이상의 기간
- (3) 상속인 요건: 상속인(또는 상속인의 배우자)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①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 ②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할 것
- ③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연부연납가산금을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4) 물납

① 요 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a.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 포함)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1/2을 초과할 것
 - b.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 c.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제외)을 초과할 것
- ② 물납청구의 범위: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다음의 a 및 b 중 중 작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a. 상속재산 중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
 - b.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금융재산(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의 금액은 차감한 금액)과 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법령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것은 제외)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
- 비상장주식**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1.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2. 국채·공채·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 ① 거래소에 상장된 것. 다만, 최초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비상장주식. 다만, 상속의 경우로서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국채 및 공채, 상장된 유가증권 및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비상장주식 물납의 제한: 상기 '② 물납청구의 범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상장주식 등으로 물납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상속세 과세가액(비상장주식 등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물납에의 충당순서: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의 순서에 의하여 신청 또는 허가하여야 한다.
- a. 국채 및 공채
 - b. 상장된 유가증권(a 제외)
 - c.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f는 제외)
 - d. 유가증권(a, b, e 제외)
 - e. 비상장주식
 - f.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
- ⑤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2. 고액상속인에 대한 사후관리

세무서장 등은 결정된 상속재산가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상속인이 보유한 부동산·주식 등 주요 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증가한 경우에는 그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그 증가한 재산에 관한 자금출처를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수증자가 자력을 상실한 경우의 증여세 면제

다음의 증여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한다. 이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 ① 저가양수·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 ②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③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 ④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4. 상속세 및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

(1)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① 수증자가 주소·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 ②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 ③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증여세액은 수증자에 대한 증여로 보지 않는다.

(3) 명의자의 물적납세의무

실제소유자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가산금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실제소유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라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재산으로써 납세의무자인 실제소유자의 증여세, 가산금 또는 강제징수비를 징수할 수 있다.

5. 부담부증여시 채무인수액

(1) 일반적인 경우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임대보증금을 포함)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수증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에 한한다)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또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은 양도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2)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배우자·직계존비속간 양도가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합산배제 증여재산

다음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은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 ①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하기 전과 후의 시가의 차액
- ②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거나 전환사채 등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이익
- ③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④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 ⑤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 ⑥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⑦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 ⑧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7.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2014 출제]

(1) 의 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말한다)을 요하는 재산(토지·건물은 제외)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해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한 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실제소유자가 해당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배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① 조세(국세·지방세 및 관세를 말한다)회피목적이 없는 경우
-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
- ③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경우

(3)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른 명의자의 물적납세의무

실제소유자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가산금 또는 강제징수비를 채납한 경우에 그 실제소유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라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재산으로써 납세의무자인 실제소유자의 증여세·가산금 또는 강제징수비를 징수할 수 있다.

8.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우회양도한 경우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자가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

으로 한다. 다만, 당초 양도자 및 그 특수관계자가 부담한 소득세의 결정세액 합계액이 당초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증여추정 배제 [2005 출제]

다음의 경우에는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①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
- ②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 ③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경우
- ④ 증권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만,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은 제외한다.
- ⑤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9. 재산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의 증여추정

(1)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자금출처로 입증된 금액이 취득재산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②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한다.

(2) 채무상환자금의 증여추정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 포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자금출처로 입증된 금액이 채무상환자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며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실명확인계좌재산의 증여추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4) 증여추정 배제

- ①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액 이하인 경우
- ②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
- ③ (1) 및 (2)의 자금출처가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다음의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text{기준금액} = \text{Min}(\text{취득재산가액 또는 채무상환가액} \times 20\%, 2\text{억원})$

Chapter

04

기출문제

2018년

비상장 영리내국법인인 (주)갑은 2018년 3월 2일 정기주주총회 결의로 이익잉여금을 처분하여 배당을 실시하였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증여세 납세의무자를 모두 제시하고 납세의무자별로 증여재산가액 및 증여세 산출세액을 답안 양식에 따라 계산하시오.

1. (주)갑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12월 31일이다.
2. (주)갑의 주주 구성 및 실제배당내역은 다음과 같다.

주 주	관 계	지분비율	실제배당
A(70세)		40%	20억원
B(45세)	A의 아들	10%	30억원
C(18세)	B의 딸	5%	90억원
D(60세)		30%	30억원
E(30세)	D의 딸	5%	20억원
(주)F		10%	10억원
합 계		100%	200억원

3. A, B, C, D, E는 모두 거주자이며, (주)F는 영리내국법인이다. A와 D는 특수관계인이 아니다.
4. 상속세 및 증여세율

과세표준	세 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억 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30억원 초과	10억 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답안 양식〉

납세의무자	증여재산가액	증여세 산출세액

해답

납세의무자	증여재산가액	증여세 산출세액
C	₩4,800,000,000	₩2,702,000,000

1. 초과배당금액

주 주	지분비율	균등배당액	실제배당액	초과(과소)배당액
A	40%	80억원	20억원	△60억원
B	10%	20억원	30억원	10억원
C	5%	10억원	90억원	80억원
D	30%	60억원	30억원	△30억원
E	5%	10억원	20억원	10억원
(주)F	10%	20억원	10억원	△10억원
합 계	100%	200억원	200억원	—

2. 최대주주의 판정

A, B(A의 아들), C(B의 딸)의 발행주식총수의 55%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최대주주에 해당한다.

3.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

A의 과소배당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B와 C가 받은 초과배당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4. 증여재산가액과 증여세 산출세액

(1) B

$$\textcircled{1} \text{ 초과배당금액} : 10\text{억원} \times \frac{60\text{억원}^{*1}}{100\text{억원}^{*2}} = 6\text{억원}$$

* 1. 최대주주인 A의 과소배당금액

2. 과소배당받은 모든 주주의 과소배당금액

$$\textcircled{2} \text{ 증여세 과세표준} : ₩600,000,000 - ₩50,000,000 (\text{증여재산공제}) = ₩550,000,000$$

$$\textcircled{3} \text{ 증여세 산출세액} : ₩90,000,000 + (₩550,000,000 - ₩500,000,000) \times 30\% = ₩105,000,000$$

$$\textcircled{4} \text{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 : ₩174,600,000 + (₩600,000,000 - ₩500,000,000) \times 42\% = ₩216,600,000$$

⑤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으므로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C

$$\textcircled{1} \text{ 초과배당금액} : 80\text{억원} \times \frac{60\text{억원}}{100\text{억원}} = 48\text{억원}$$

$$\textcircled{2} \text{ 증여세 과세표준} : \text{₩}4,800,000,000 - \text{₩}20,000,000^* (\text{증여재산공제}) = \text{₩}4,780,000,000$$

*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이므로 ₩20,000,000을 공제한다.

$$\textcircled{3} \text{ 증여세 산출세액} : \text{₩}1,040,000,000 + (\text{₩}4,780,000,000 - \text{₩}3,000,000,000) \times 50\% \\ = \text{₩}1,930,000,000$$

④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

$$\text{₩}1,930,000,000 \times 140\%^* = \text{₩}2,702,000,000$$

*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를 할증과세한다.

⑤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 :

$$\text{₩}174,600,000 + (\text{₩}4,800,000,000 - \text{₩}500,000,000) \times 42\% = \text{₩}1,980,600,000$$

⑥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많으므로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한다.

2018년

거주자 갑이 상속받은 (주)대한의 주식과 관련된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1. 상속받은 주식 수는 70,000주이며, 상속개시일은 2019년 7월 1일이다.
2. 12월말 비상장법인인 (주)대한은 부동산과다법인이 아니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도 아니다.
3.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주)대한의 자산총계는 100억원, 부채총계는 50억원이다.
 - (1) 자산총계에는 개발비 ₩500,000,000이 포함되어 있고, 세무상 영업권 평가액 ₩500,000,000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2) 부채총계에는 퇴직급여충당금 계상액 ₩800,000,000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상속개시일 현재 퇴직금추계액의 50%에 해당한다.
4. (주)대한의 총 발행주식수는 2010년 설립 이후 변동 없이 100,000주이다.
5. (주)대한의 각 사업연도 순손익액을 구하기 위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사업연도	내역
2018년	－ 각사업연도소득금액 : ₩650,000,000
	－ 국세 환급금 이자 : 5,000,000
	－ 당해연도 법인세 등 : 150,000,000
2017년	－ 각사업연도소득금액 : ₩580,000,000
	－ 접대비 한도초과액 : 20,000,000
	－ 당해연도 법인세 등 : 110,000,000
2016년	－ 각사업연도소득금액 : ₩470,000,000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 15,000,000
	－ 당해연도 법인세 등 : 80,000,000

6. 순손익가치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은 10%이다.

〈요구사항 1〉

상속재산인 (주)대한의 비상장주식 평가액을 다음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주)대한의 비상장주식 평가는 순자산가치만 평가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답안 양식〉

1주당 순자산가치	
1주당 순손익가치	
1주당 평가액	
비상장주식평가액	

〈요구사항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방법과 소득세 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차이에 대해 5줄 이내로 기술하시오.

해답

1. 비상장주식평가액

1주당 순자산가치	₩42,000
1주당 순손익가치	₩46,500
1주당 평가액	₩44,700
비상장주식평가액	₩4,067,700,000

(1) 1주당 순자산가치

$$\textcircled{1} \text{ 순자산가액} : (100\text{억원} - 5\text{억원}^{*1} + 5\text{억원}^{*1}) - (50\text{억원} - 8\text{억원}^{*2} + 8\text{억원} \div 50\%^{*2}) = 42\text{억원}$$

* 1. 개발비는 자산에서 제외하되, 영업권평가액은 자산에 포함한다.

2. 충당금과 준비금은 부채에서 제외하되, 평가기준일 현재 퇴직금추계액은 부채에 포함한다.

$$\textcircled{2} \text{ 1주당 순자산가치} : 42\text{억원} \div 100,000\text{주} = \text{₩}42,000$$

(2) 1주당 순손익가치

\textcircled{1} 각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과 목	2016년	2017년	2018년
(1) 각사업연도소득금액	₩470,000,000	₩580,000,000	₩650,000,000
(2) 가산항목			
\textcircled{1} 국세환급금이자			5,000,000
(3) 차감항목			
\textcircled{1} 접대비한도초과액		20,000,000	
\textcircled{2} 지급이자손금불산업액	15,000,000		
\textcircled{3} 법인세등	80,000,000	110,000,000	150,000,000
(4) 순손익액	₩375,000,000	₩450,000,000	₩505,000,000
(5) 발행주식수	100,000주	100,000주	100,000주
(6) 1주당 순손익액(5)÷(4)	₩3,750	₩4,500	

\textcircled{2}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text{₩}3,750 \times 1 + \text{₩}4,500 \times 2 + \text{₩}5,050 \times 3) \div 6 = \text{₩}4,650$$

$$\textcircled{3} \text{ 1주당 순손익가치} : \text{₩}4,650 \div 10\% = \text{₩}46,500$$

(3) 1주당 평가액 : $\text{Max}[\textcircled{1}, \textcircled{2}] = \text{₩}44,700$

$$\textcircled{1} (\text{₩}46,500 \times 3 + \text{₩}42,000 \times 2) \div 5 = \text{₩}44,700$$

$$\textcircled{2} \text{₩}42,000 \times 80\% = \text{₩}33,600$$

$$(4) \text{ 비상장주식 평가액} : 70,000\text{주} \times \text{₩}44,700 \times 130\%^{*} = \text{₩}4,067,700,000$$

* 지분을 50% 초과인 최대주주의 주식은 30% 할증평가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방법과 소득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차이

(1) 순손익가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평가기준일 이전 3년간의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하여 순손익가치를 계산하나, 소득세법에서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직전 1년간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순손익가치를 계산한다.

(2) 순자산가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으로 자산을 평가하나, 소득세법에서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세무상 장부가액(토지는 기준시가)으로 평가한다.

(3) 최대주주 할증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최대주주의 보유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를 하나, 소득세법에서는 할증평가를 하지 않는다.

2015년

거주자 갑은 2017년 11월 15일 (주)씨네로부터 영화플러스영화관 운영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받아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아래의 자료를 토대로 물음에 답하시오.

〈자 료〉

1. (주)씨네는 2017년 10월 24일 영화관 사업에 관하여 2017년 제2기 예정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 ₩30,000,000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는 않았다.
2. (주)씨네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2017년 12월 5일 (주)씨네에 위 미납한 부가가치세 ₩30,500,000(납부불성실가산세 ₩500,000 포함)의 납부기한을 2017년 12월 31일로 정하여 납세고지하였다.
3. 관할세무서장은 (주)씨네가 납부기한이 경과하도록 위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주)씨네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였지만, 납부하여야 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충당하기에 부족하였다.
4. 관할세무서장은 2018년 5월 8일 갑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위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와 이에 대한 가산금 등 합계 ₩35,000,000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물음 1)

관할세무서장이 갑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근거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물음 2)

관할세무서장이 갑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서술하시오.

해답

1.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위 사안에서 (주)씨네는 2017년 10월 24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었고, 거주자 갑은 2017년 11월 15일 사업을 양수하였으므로 해당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처분일인 2017년 12월 5일 확정되었으며 가산금은 납부기한인 2017년 12월 31일이 경과한 후에 확정되었으므로 사업양수일 현재 확정된 조세채무가 아니다. 따라서 거주자 갑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

2014년

(물음 1)

다음 각 사례별로 납세의무자와 적용 가능한 세법상 규정을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구체적인 세법조항을 명시하지 않아도 되며, 어떠한 내용이 적용가능한지만 기술해도 되나 세법명만 적으면 안됨). 단, 각 사례는 독립적이다.

〈답안 양식〉

사 례	납세의무자	적용가능 세법규정
(예시)	A	합병에 따른 상장이익의 증여로 인해 증여세 납부
1		
2		

〈사례 1〉

2018년 2월, 거주자 갑의 모친인 거주자 을은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법인 (주)B(2016년에 설립)의 주식 1,000주(지분율 3%)를 갑에게 증여하였으나, 갑은 이를 조세회피목적으로 비상장법인 (주)A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주)A는 갑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세법에 따른 결손금이 없는 영업 중인 회사이다.

〈사례 2〉

2018년 6월, 거주자 갑의 배우자인 거주자 병은 보유하고 있던 토지(시가 ₩300,000,000)를 비상장법인 (주)C에게 ₩100,000,000에 양도하였다. (주)C는 갑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휴업 중인 회사이다.

(물음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추정과 증여의제의 차이점을 비교설명하고, 각각에 해당하는 사례를 2개씩 기술하시오(8줄 이내, 초과부분은 채점에서 고려하지 않음).

(물음 3)

갑은 대학 졸업 후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창업을 하였다. 갑이 받은 구체적인 도움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2018년도 갑, 을, 병, 정에게 적용 가능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문제를 답안 양식에 따라 기술하시오. 단, 적용 세법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없음” 이라고 표시하시오.

<답안 양식>

구 분	세법명	적용 가능한 과세 문제
갑		
을		
병		
정		

<자 료>

- 부동산 임대사업자인 부친 을의 상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100억원)를 2018년 1월 1일부터 무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 친구인 병의 토지(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20억원)를 2018년 2월 1일부터 무상으로 빌려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 2018년 3월 1일, 대금업을 운영하지 않는 모친 정으로부터 사업자금으로 현금 5억원을 0.1%의 연이자율로 차입하였다. 차용증서 등 관련 증명서류는 적법하게 구비되었다.
- 갑, 을, 병, 정은 모두 거주자이다.

■ 해답

(물음 1)

사 례	납세의무자	적용가능 세법규정
1	갑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로 인해 증여세 납부
2	갑	특정법인과 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로 인해 증여세 납부

(물음 2)

정부부과국세인 증여세에 있어서 증여의 입증책임은 본래 과세관청에 있으나 증여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 이를 증여로 추정함으로써 과세관청의 증여 입증책임이 납세의무자의 증여받지 않았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으로 전가된다.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하는 경우 증여추정의 효력은 상실된다. 반면에 증여의제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일정한 사실을 법률의 힘에 따라 증여로 취급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의 반증이 허용되지 않고 일률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된다.

증여추정 사례: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재산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의 증여추정

증여의제 사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특수관계법인과 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물음 3)

구 분	세법명	적용 가능한 과세 문제
갑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
을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임대함으로써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부당행위계산부인) 및 부가가치세 과세
병	없음	—
정	없음	—

2013년

다음은 제조업(대표이사 홍산천)을 영위하는 (주)산천에 대한 자료이다. 이 자료를 기초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토요일 및 공휴일로 인한 기한의 연장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당기 사업연도는 제15기(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이다.

〈자 료〉

- 과세관청이 2018년 12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실시한 (주)산천의 제14기(2017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사업연도 법인세 세무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산천은 제14기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다.
 - ₩200,000,000의 현금 매출누락이 적발되었으며 관련 매출원가는 허위임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매출누락금액은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지만 그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이사인 홍산천(거주자)의 상여로 소득처분되었다.
 - 업무무관경비로 손금불산입된 ₩100,000,000은 주주인 김영수(거주자)의 배당으로 소득처분되었다.
- 2018년 12월 23일에 과세관청이 법인세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제14기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과 동시에 아래와 같이 소득처분하였다.

소득종류	소득금액	성 명
상 여	₩200,000,000	홍산천
배 당	₩100,000,000	김영수

- 2018년 12월 27일에 과세관청은 세무조사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주)산천에게 발송하였으며, (주)산천은 2018년 12월 29일에 이를 수령하였다.
- 과세관청은 (주)산천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하였다는 사실을 홍산천과 김영수에게 각각 2019년 1월 3일 및 2019년 1월 6일에 통보하였다.
- 2018년 12월 28일에 과세관청은 세무조사에 따라 증액경정된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주)산천에게 발송하였으며, (주)산천은 2018년 12월 31일에 이를 수령하였다.

(물음 1)

세무조사 결과 소득처분에 대한 (주)산천의 원천징수의무의 성립시기와 확정시기, 원천징수 세액의 납부기한에 대한 구체적인 일자(예 : 2018년 12월 5일)와 근거를 아래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내 용	일 자	근 거
① 성립시기		
② 확정시기		
③ 납부기한		

(물음 2)

세무조사 결과 소득처분된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홍산천과 김영수의 종합소득세 추가 자진 납부기한에 대한 구체적인 일자(예 : 2018년 12월 5일)와 근거를 아래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내 용	일자	근거
홍산천		
김영수		

(물음 3)

(주)산천이 위의 세무조사 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때 원천징수의무와 관련된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납세고지된 법인세에 대하여 ① 불복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와 ② 만약 불복청구가 가능하다면 불복청구기한에 대한 구체적인 일자(예 : 2018년 12월 5일)를 아래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내 용	① 불복청구 가능여부	② 불복청구 기한
소득금액변동통지		
법인세 납세고지		

(물음 4)

일반적인 행정처분과는 다른 조세의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의 효력과 그 내용을 3줄 이내로 쓰시오.

■ 해답

(물음 1)

내 용	일 자	근 거
① 성립시기	2018년 12월 29일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일
② 확정시기	2018년 12월 29일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일
③ 납부기한	2019년 1월 10일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일(지급시기 의제)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물음 2)

내 용	일 자	근 거
홍산천	2019년 2월 28일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김영수	2019년 2월 28일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물음 3)

내 용	① 불복청구가능여부	② 불복청구기한
소득금액변동통지	가능	2019년 3월 29일 ^{*1}
법인세납세고지	가능	2019년 3월 31일 ^{*2}

* 1. 2018년 12월 29일부터 90일 내

2. 2018년 12월 31일부터 90일 내

(물음 4)

- ① 기속력: 불복청구인과 관계행정청을 그 결정에 따르도록 하는 기속력 또는 구속력을 갖는다.
- ② 불가쟁력: 다음 심급에 대한 불복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 결정은 형식적으로 확정되며, 이후 그 효력을 다룰 수 없다.
- ③ 불가변력: 재결정 자신도 이에 구속되며 그 결정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2012년

1. 국제기본법상 가산세의 개념 및 성격에 대하여 3줄 이내로 약술하십시오.
2. 국제기본법상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에 대하여 3줄 이내로 약술하십시오.
3. 거주자인 나변칙씨는 (주)일사의 주식을 55% 보유하고 있는 지배주주이다. (주)일사는 나변칙씨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인 (주)이사에게 시가보다 현저한 고가로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주)일사의 2018년 매출액의 70%에 해당한다. 나변칙, (주)일사, (주)이사에게 적용 가능한 세법상 규정(구체적인 세법조항을 명시하지 않아도 되며, 어떠한 내용이 적용가능한지만 기술해도 됨)은 무엇이 있을지 답안양식에 따라 답하십시오.

〈답안 양식〉

구 분	적용가능 세법규정
나변칙	
(주)일사	
(주)이사	

■ 해답

- 가산세란 세법에 규정된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세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가산세는 당해 세법이 정하는 세목에 포함되며 각종 의무불이행에 대한 징벌적 성격의 조세이다.
-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는 경우(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제외)에는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다음과 같이 감면한다.
 - 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90% 감면
 - ②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수정신고한 경우: 75% 감면
 - ③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수정신고한 경우: 50% 감면
 - ④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30% 감면
 - 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20% 감면
 - ⑥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10% 감면
- 적용가능 세법규정

구 분	적용가능 세법규정
나변칙	나변칙이 (주)일사의 지배주주이고, 나변칙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인 (주)이사에 대한 (주)일사의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규정을 적용한다.
(주)일사	(주)이사에 고가로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이사	특수관계법인인 (주)일사로부터 고가로 용역을 제공받았으므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2011년

다음은 (주)일진(비상장법인)에 관한 <자료>이다. 이 자료를 기초로 하여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자 료〉

1. (주)일진은 제8기(2015년 1월 1일 ~ 12월 31일)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법정신고기한인 2016년 3월 31일까지 신고하지 못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2016년 5월 15일자로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세액을 전액 납부하였다.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의 내용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후, (주)일진이 신고한 내용 그대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2016년 7월 15일자로 결정하여 납세고지서를 통지하였다. 납세고지서는 통지를 한 날 (주)일진에 도달하였다.
2. 과세당국은 2018년 5월 1일부터 5월 14일까지 (주)일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경과는 다음과 같다.
 - ① (주)일진은 2016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 ② 과세당국은 위의 신고 내용에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이 포함되어 있음을 발견한 후, 2018년 7월 31일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12억원을 납세고지하였다.
 - ③ (주)일진은 위의 납부기한 내에 2억원만 납부하였다. 납부 후 (주)일진에는 더 이상 남은 재산이 없다. 따라서 과세당국은 (주)일진으로부터는 잔액 10억원을 징수할 수 없게 되었다.
3. 거주자 '갑'은 (주)일진 주식의 지분 90%를 (주)일진이 설립될 때부터 계속하여 소유해 왔으며, 2018년 2월 1일에 그 소유주식의 전부를 거주자 '을'에게 매도하였다. (주)일진의 나머지 주식은 (주)금융(지분비율 : 10%)이 소유하고 있으며, (주)일진의 발행주식은 모두 의결권 있는 주식이다.
4. 거주자 '갑', 거주자 '을' 및 (주)금융은 서로 국제기본법상의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5. 거주자 '갑'과 거주자 '을'은 조세채무를 이행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다고 가정한다.

〈요구사항 1〉

(주)일진의 제8기(2015년 1월 1일 ~ 12월 31일)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 확정 시기는 언제인가?

〈요구사항 2〉

(주)일진의 2016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추징세액 중 미납액 10억원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언제인가?

〈요구사항 3〉

과세당국은 미납된 (주)일진의 2016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누구에게 징수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최대금액은 얼마인가?

해답

〈요구사항1〉

2016년 7월 15일(납세고지서 도달일)

〈요구사항2〉

2018년 8월 1일(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 다음날)

〈요구사항3〉

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는 해당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이므로 2016년 6월 30일(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인 거주자 '갑'에게 미납된 세액을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할 수 있는 최대금액은 9억원(10억원×90%)이다.

2010년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자 료〉

1. 2014년초 이성실씨와 김불량씨(서로 특수관계 없음)는 50%씩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시작하였다. 2014년의 사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액(제1기분과 제2기분 포함)은 ₩400,000,000이고,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금액은 ₩600,000,000이었으며 두 사람에게 귀속되는 부분은 각각 50%씩이다.
2. 이성실씨와 김불량씨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었으며 2014 과세연도의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은 각각 ₩100,000,000이다.
3. 이성실씨와 김불량씨는 해당 사업을 2015년 6월 박무관씨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 사업의 양도가액은 ₩60,000,000이고 그 시가는 ₩50,000,000이었다.
4. 2018년초 김불량씨는 개인 재산을 탕진한 후 범죄를 저지르고 잠적하였으며, 2018년 5월 이성실씨는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사망 당시 이성실씨의 재산(예금)은 ₩600,000,000으로 상속인인 다섯명의 아들 이자일, 이자이, 이자삼, 이자사, 이자오에게 20%(₩120,000,000)씩 상속되었다. 상속세액은 ₩10,000,000으로 아들 각자에게 20%(₩2,000,000)씩 과세되었으나 다섯명 모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5. 이성실씨와 김불량씨는 2014년분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에 대하여 기한 내에 신고하였으나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과세당국도 2018년 두 사람이 잠적하거나 사망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6. 이자일씨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의 상속인들은 재산을 상속받은 후 도박으로 이를 탕진하고 행방불명되었으며 다른 재산을 남기지 않았다.
7. 이자일씨와 박무관씨는 충분한 개인 재산을 가지고 있다.

〈요구사항〉

이성실씨의 네 아들들이 가산을 탕진한 직후인 2018년말, 과세당국은 2014년의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김불량씨로부터 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징수하고자 한다. 그러나 김불량씨로부터는 징수가 불가능하므로 납세의무를 확장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① 누가(조세부담자), ② 어떤 근거로(부담사유), ③ 얼마의 세액을 부담(부담세액)하여야 하는지 다음의 답안양식에 따라 설명하시오.

단, 부담세액의 산정에 있어서 가산세를 제외한 본세만 고려하며, 납세의무 확장제도가 둘 이상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연대납세의무, 납세의무의 승계, 제2차 납세의무의 순서로 적용하여 세액을 징수한다고 가정한다.

〈답안 양식〉

세 목	① 조세 부담자	② 부담사유	③ 부담세액
김불량씨의 2014년 소득세			
김불량씨의 2014년 부가가치세			

* 부담사유 예시 : ○○○의 납세의무가 ×××에게 승계, ×××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가 제2차 납세의무 부담, △△△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가 연대납세의무 부담 등

해답

세 목	① 조세부담자	② 부담사유	③ 부담세액
김불량씨의 2014년 소득세	박무관	김불량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박무관이 제2차 납세의무 부담	₩60,000,000
김불량씨의 2014년 부가가치세	이자일	김불량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이성실이 연대납세의무 부담, 이성실의 납세의무가 이자일에게 승계	₩110,000,000

2009년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자 료〉

(주)조세는 2018년 3월 중 설립되었으며 설립과 동시에 미가공 농산물인 A(식용에 공할 수 없는 품목임)를 수입하여 이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개시하였다. (주)조세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신청하였고 관할세무서장은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

2018년 3월 설립당시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농산물 A의 공급이 과세대상인지에 대하여 명문규정이 없으나 식용에 공하지 않는 미가공 농산물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를 과세거래로 규정하고 있다.

(주)조세는 2018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2019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계속하여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은 2021년 11월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020년 5월 (주)조세는 국세청장에게 A의 면세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였다.

“당사가 수입하는 농산물 A의 판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A는 식용으로 공하고 있으며 미가공 상태로 수입 후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원시적인 1차 가공만을 거친 것입니다.”

위의 질의에 대하여 2020년 6월, 국세청장은 농산물 A가 면세대상 농산물에 해당한다고 (주)조세에게 회신하였다. 이에 따라 (주)조세는 2020년 제1기 과세기간이후에도 계속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021년 6월 초 국회에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공포되었으며 공포 즉시 시행되었다. 개정내용 중에는 농산물 A의 공급이 면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2021년 11월 관할세무서장은 과세처분하지 않았던 2018년 제1기분부터 2021년 제1기분까지의 농산물 A의 공급에 대하여 일괄하여 과세처분하였다.

(물 음) 위의 자료를 기초로 다음의 물음에 대하여 답안양식에 따라 답하시오.

- (1) 201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취소되어야 하는가?
- (2) 202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취소되어야 하는가?
- (3) 202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처분은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따라 취소되어야 하는가?

〈답안 양식〉

처분대상과세기간	적용원칙	과세처분의 취소 여부	과세처분취소 또는 유지의 이유
2018년 제2기	신의성실의 원칙		
2020년 제2기	신의성실의 원칙		
2021년 제1기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		

| 해답

처분대상과세기간	적용원칙	과세처분의 취소 여부	과세처분취소 또는 유지의 이유
2018년 제2기	신의성실의 원칙	과세처분 유지	(1)
2020년 제2기	신의성실의 원칙	과세처분 유지	(2)
2021년 제1기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	과세처분 유지	(3)

- (1) 식용에 공하지 않는 미가공 농산물의 수입·판매가 과세거래로 규정된 상황에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A의 과세 여부에 대한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 (2) 납세자의 질의에 허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회신에 근거한 납세자의 신뢰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이유로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 (3) 애초에 A의 수입·판매는 과세거래로 규정되어 있었으며 2021년 6월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은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을 논할 계제가 아니다.

| 2008년

국세기본법에서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합병법인의 국세에 대한 합병법인의 납세의무와 사업양도인의 국세에 대한 사업양수인의 납세의무는 이러한 제도에 해당된다. 하지만 두 제도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다 음〉

- ①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요건
- ② 납세의무의 한도
- ③ 합병법인 및 사업양수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피합병법인 및 사업양도인의 국세의 범위

해답

- ① 법인간 합병이 있는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사업의 포괄양수도가 있는 경우 사업양수인은 사업양도인의 체납국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 ② 합병법인의 납세의무 승계는 한도가 없는 포괄 승계인 반면,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수한 자산가액을 한도로 한다.
- ③ 합병법인이 승계하는 피합병법인의 납세의무는 확정 여부에 관계없이 성립된 납세의무 전액인 반면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수한 사업과 직접 관련된 국세로서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납세의무에 한한다.

2007년

1. 다음 자료를 기초로 하여 답하시오.

〈자 료〉

- ① 2018년 3월 1일자로 (주)금강은 (주)화성으로부터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주)태양의 주식 400주(지분비율 40%)를 취득하였다.
- ② 2018년 5월 1일자로 (주)금강은 거주자 '갑'으로부터 (주)태양의 주식 200주(지분비율 20%)를 추가로 취득하였다.
- ③ (주)태양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차량 등의 취득세 과세대상자산 총액은 2018년 3월 1일 현재 ₩900,000,000이고, 2018년 5월 1일 현재 ₩1,000,000,000이다.
- ④ (주)태양은 위 부동산, 차량 등의 취득세 과세물건을 2017년 8월 1일자로 취득하였다.
- ⑤ 2017년 8월 1일 현재 (주)태양의 발행주식총수는 1,000주이며 2018년 5월 1일까지 변동이 없었다.

(1) (주)금강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언제인가?

(2) (주)금강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구하시오.

해답

- (1) 성립시기 : 2018년 5월 1일
- (2) 과세표준 : $₩1,000,000,000 \times 60\% = ₩600,000,000$

2. 국세기본법상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적용요건과 그 효과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해답

(1) 요 건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적용요건은 다음과 같다.

- ①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모든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사업의 양수가 있어야 한다.
- ② 양수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로서 사업양도일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이어야 한다.
- ③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어야 한다.

(2) 효 과

사업양수인은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2006년

1. “서류의 송달”이란 과세관청이 국세에 관한 처분 및 통지에 관한 서류를 처분대상자 등에게 보내는 절차를 말한다. 이에 관하여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단, 1)과 2)는 상호 독립적이다.

- 1) 세무공무원인 김국세씨는 동강산업(주)의 납세고지서 송달을 위하여 사업장을 방문하였는데 방문당시 이 회사의 이사나 기타 직원(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로 가정함)들이 서류의 수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였다. 이러한 경우에 김국세씨가 선택할 수 있는 적법한 서류의 송달방법에 대하여 세 줄 이내로 기술하시오.
- 2) 국세기본법 상 서류 송달의 효력 발생 시기를 송달의 방법별로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해답

- 1) 유치송달한다. 즉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사용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2) ① 교부·우편 및 전자송달

교부·우편 및 전자송달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② 공시송달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전적(事前的) 권리구제제도로써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1) 과세전적부심사를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네 가지를 열거하시오.
 - 2)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 중 세 가지만 열거하시오.

해답

- 1) 과세전적부심사를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①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
 - ② 국세청장의 훈령·예규·고시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
 - ③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하는 과세예고통지에 관한 것
 - ④ 위 이외의 사항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금액이 1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것
 - ⑤ 감사원법에 따른 시정 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 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지 못한 것
- 2)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
 - ① 국세징수법에 규정된 납기전 징수 사유 또는 세법에 규정된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 ②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 ③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와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 ④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
 - ⑤ 불복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세무조사인 경우

2005년

1. 실질과세원칙과 관계된 아래의 질문에 답하시오.
 - 1) 실질과세원칙의 개념을 정의하고, 동 원칙과 완전포괄주의증여개념과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2) 현행 세법에 규정된 내용 중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로 볼 수 있는 것을 한 가지 들고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시오.

해답

- 1) 실질과세의 원칙이란 법적 형식과 경제적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러한 실질과세의 원칙은 귀속에 관한 실질과세와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과세 및 우회거래에 대한 실질과세로 구분된다.
완전포괄상의 이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과세원칙을 구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건물은 제외)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부의 무상이전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증여세를 부과하므로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라 할 수 있다.
2.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배우자 등”이라 함)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데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는 증여추정을 하지 않는다. 그러한 예외항목으로 법령에 규정된 것 중 네 가지를 열거하시오.

해답

- ①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
 - ②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 ③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경우
 - ④ 증권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만,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은 제외한다.
 - ⑤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3. 거주자 갑은 2018년 6월 1일 현재 지방세 시가표준액이 10억원인 주거용 아파트 한 채를 서울시 강남구에 보유하고 있다. 2018년 중 부동산 보유로 인해 갑에게 부과되어지는 세목, 과세주체, 납기를 설명하시오. 단, 본세에 부가되는 세목은 고려하지 마시오.

해답

- 1) 재산세
 - ① 과세주체 : 강남구청장 및 서울시장(특별시 관할구역 안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50%는 구세로 징수하고, 50%는 특별시세로 징수하여 자치구에 교부함)
 - ② 납기 : 50%는 7. 16 ~ 7. 31, 나머지 50%는 9. 16 ~ 9. 30

- 2) 지역자원시설세
 - ① 과세주체 : 서울시장
 - ② 납기 : 재산세와 동일
- 3) 종합부동산세
 - ① 과세주체 : 관할 세무서장
 - ② 납기 : 12. 1 ~ 12. 15

2004년

1. 국세기본법상 국세우선권에 대한 제한규정에 대해 약술하시오.

해답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의 금액에 대하여는 우선하지 아니한다.

- ①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소요된 비용
 - ② 선집행 지방세·공과금의 강제징수비 및 국세의 강제징수비
 - ③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질권·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 ④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보증금
 - ⑤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국세·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채권
2. 서울 시내에 거주하는 김치국씨는 2018년 6월 15일 허갑부씨로부터 서울소재 상가건물 및 부속토지를 각각 ₩500,000,000과 ₩700,000,000에 구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계약금(구입금액의 10%) ₩120,000,000을 지급하였고,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인 2018년 7월 20일 잔금 ₩1,080,000,000을 지급하였다. 아울러 김치국씨는 2018년 8월 10일 동 상가와 부속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등기소에 접수하였으며, 동년 8월 13일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다.
- 이 경우 김치국씨가 2018년도에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 세목과 세목별 납부기한은? (단, 납부기한은 X월 X일 형태로 답하시오.)

해답

1) 취득세 : 9월 18일

* 취득일은 잔금지급일인 7월 20일이며, 취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임. 단, 재산권과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기·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2) 지방교육세 : 9월 18일

* 본세의 징수방법에 따름.

2003년

1.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납세자가 신고한 신고내용에 오류나 변동이 있는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바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의 사유, 기한, 효과에 대하여 10줄 이내로 각각 서술하시오.

해답

1) 사유

- ① 수정신고 : 당초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또는 과세표준은 변동 없으나 신고내용이 불완전한 경우
- ② 경정청구 :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대신고(결정·경정 포함)한 경우

2) 기한

- ① 수정신고 :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국세부과의 일반적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 ② 경정청구
 - a. 최초신고·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 b. 결정·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 :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c.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 :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

3) 효과

- ① 수정신고 : 신고납부제도 세목은 확정 효력이 있으나 정부부과제도 세목은 확정 효력이 없다.
- ② 경정청구 : 세액의 확정효력은 없으며, 관할세무서장은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경정하거나 결정·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미국법인인 International Ltd.가 100% 투자하여 설립한 내국법인인 (주)인터내셔널한국(금융기관이 아님)은 사업연도 종료일인 2018년 12월 31일 현재 다음과 같은 자본구조를 가지고 있다.

- 설립일 : 2014년 7월 3일
- 자본 총계 : ₩10,000,000,000
 - 납입자본금 : ₩5,000,000,000(설립일 이후 변동없음)
 - 이익잉여금 : ₩5,000,000,000
- 부채총계 : ₩50,000,000,000
 - 퇴직급여충당금등 부채 : ₩5,000,000,000
 - 주주차입금 : ₩45,000,000,000

주주차입금은 (주)인터내셔널한국이 신규사업확장을 위하여 2017년 12월 31일에 주주인 International Ltd.로부터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을 감안한 연 5%의 이자율로 차입한 것으로 당기분 상환이나 추가 차입은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회사가 당기에 계상한 지급이자 $\text{₩}2,250,000,000$ 이다. 단,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비교가능한 법인은 없다.

- (1)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소자본제도는 어떠한 거래를 통제하기 위한 것인지 그 목적을 5줄이내로 설명하시오.
- (2) (주)인터내셔널 한국의 당해 사업연도의 과소자본제도에 따른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하시오.

해답

- 1) 과소자본세제는 다국적기업이 외국에 진출함에 있어 진출국기업의 자본금은 최소화하고 대부분의 자금을 차입금으로 조달하여 진출국기업의 지급이자를 증가시킴으로써 진출국기업의 과세소득금액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2)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text{₩}1,250,000,000^*$ (배당)

* 초과적수 : $\text{₩}45,000,000,000 - \text{₩}10,000,000,000 \times 2 = \text{₩}25,000,000,000$

지급이자 부인액 : $\text{₩}25,000,000,000 \times 5\% = \text{₩}1,250,000,000$

2002년

1. 우리나라의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특별상각, 소득공제, 세액공제·감면등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조세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반면, 과다한 조세감면을 배제시킴으로써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최저한세제도를 동시에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세부담에 있어서 서로 상충되는 두 제도의 목표를 조세감면제도와 최저한세제도의 입장에서 각각 5줄 이내에 설명하시오

해답

1) 조세감면제도의 목표

조세는 재정수입조달을 주목적으로 하지만 이 외에도 다른 경제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부차적인 목적도 가지고 있는데, 조세감면제도는 이러한 조세의 부차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즉, 조세감면제도의 목표는 중소기업지원, 연구 및 인력개발의 촉진, 투자촉진 등의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것이다.

2) 최저한세제도의 목표

최저한세란 조세감면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최저한세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배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최저한세제도의 목표는 조세감면도를 이용하여 세금을 감면받는 경우에도 조세감면의 종합한도를 설정함으로써 세부담의 형평성과 조세수입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2. 박영무 씨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살다가 강남구에 소재하는 아파트 1채를 분양받아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인 2018년 2월 20일에 잔금을 지급한 다음 4월 15일에 소유권이전등기와 전입신고를 완료한 후 즉시 입주를 하였다. 이 아파트는 지방세법상 비과세, 면제 및 소액부징수대상이 아니다. 박영무 씨는 근로소득자인 세대주로서 2018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4,000,000을 납부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가정할 경우 박영무 씨가 2018년도에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중 보통세의 세목과 세목별 과세대상을 열거하시오.

해답

1. 취득세 : 아파트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가 과세된다.
2. 재산세 : 아파트의 보유에 대하여 재산세가 과세된다.
3. 지방소득세 :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개인지방소득세가 과세된다.
4. 주민세 : 8월 1일 현재 관할 시군 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주민세 균등분이 과세된다.

2001년

1.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해답

1. 과점주주가 된 때

과점주주가 아닌 자가 비상장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새로이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당해 과점주주가 그 시점의 지분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과점주주는 과점주주가 된 시점에서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다만, 법인설립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점주주가 된 때를 기준으로 납세의무를 판단하므로 과점주주가 된 이후에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과점주주에게 취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기존의 과점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과점주주가 주식이나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당시보다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과세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당해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또는 지분의 최고비율보다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담보제공된 상속재산의 평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해답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과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여기서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은 다음과 같다.

- (1)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 (2)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
-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 (4) 질권이 설정된 재산 및 양도담보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 (5)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등기된 전세금(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